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5-1-25

규정번호 5-1-25
제정일자 2015.11.23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7차 개정
관리부서 AI・IR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우리대학으로부터 제반 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은 자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교직원 등 우리대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개정 2024.7.24.)
2. “만족도 지수”라 함은 수요자가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표현하는 지수를 말한다.
3. “조사담당자”라 함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4조(주관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는 AI・IR센터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2.26., 2018.08.27.,2023.03.30.,2024.7.24., 2026.2.6.)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개정 2024.7.24.)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5.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제5조(관련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관련부서는 관련 학과 및 부서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조번호 변경 2018.02.26., 개정 2024.7.24)

1.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계획 수립·실시(개정 2018.02.26.)

제3장 업무절차

제6조(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① AI・IR센터는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2018.08.27., 2023.03.30.,2024.7.24., 2026.2.6.)

② 조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02.26.,2024.7.24)

1.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조사시기(일정) 및 대상
3. 조사기준 및 방법
4. 조사항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 실시) ① AI・IR센터는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2018.08.27.,2023.03.30.,2024.7.24., 2026.2.6.)

② 조사담당자는 평가대상 및 방법에 따라 조사방법을 최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조사개시 이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인터뷰, 유선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장에게 조사 자료를 제출한다.

제8조(결과분석 및 통보) ① AI・IR센터는 조사 자료를 분석·평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과 및 부서에 통보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2018.08.27.,2023.03.30.,2024.7.24., 2026.02.06)

② (항삭제 2018.02.26.)

제9조(환류) ① 관련 학과 및 부서는 조사결과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활동 또는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예방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AI・IR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2018.08.27.,2023.03.30.,2024.7.24., 2026.02.06)

② AI・IR센터는 개선조치 보고서를 매년 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6., 2018.08.27.,2023.03.30.,2024.7.24.,2026.2.6.)

③ 관련 학과 및 부서는 개선조치 보고서를 토대로 차후 학과 운영계획 및 부서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8.02.26., 개정 2024.7.24)

제10조(보칙) 학과 또는 부서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7.14.)(조번호 변경 2018.02.26.)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호, 제4조, 제4조제1호,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